##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9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소병훈·허 영·정성호

김영진 · 김교흥 · 이원택

박 정ㆍ이수진ㆍ서영석

서삼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u>연금</u>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u>한다</u> .	